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71호, 2022. 7.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2.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아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안전관리"란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교육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란 교육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사전계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시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 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관련 시설의 경우: 시·도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p>		
<p>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p>		

<p>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자산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의 안전성 또는 관리 상태에 대한 평가·점검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복구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의 조성 및 안전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초·중·고등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⑤ 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절차,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p> <p>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p> <p>③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④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그 실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p>	<p>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p> <p>②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③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제7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 ①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시설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복수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5. 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을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감 협의체
3. 「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학교협의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최소환경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건축·설비·시설·후계·놀이공간 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최소환경기준의 세부 내용 및 공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건축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적정 면적 확보 교육공공시설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공간 설계 및 환경 조성 관련 사항
2. 학교설비기준: 교육·연구 및 실습 등 각종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활동공간 기준: 학습, 놀이 및 휴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활동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 등) ① 감독기관의 장은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평가·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평가·점검에 관련된 세부 내용, 절차,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법 및 관계 규정의 준수 여부
2.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 조치의 이행 여부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점검 대상, 내용 및 실시시기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이용자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이용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유지관리기준의 내용, 제3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28.>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내진 설계, 내진 보강, 내진 성능 평가, 그 밖에 각종 진동·충격과 교육시설의 하중(荷重)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피난·방화·소방 시설의 설치 및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 설계·시공 및 교육시설의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감염병의 예방·관리,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및 친환경 재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세부 항목별 준수 여부, 향후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에 대한 화재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12조의2(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방시설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9.>

1. 정기조사: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합동으로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기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재난·재해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② 소방시설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6. 28.]

제12조의3(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그 조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6. 28.]

<p>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①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주기, 등급, 유효기간, 인증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 연면적 1백제곱미터 2.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p>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이하 "교육시설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p> <p>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안전 기준: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기계·가스·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 2. 실내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3. 외부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 안전, 교육시설의 보안 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 <p>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등급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의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p> <p>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우수 등급의 경우 5년으로 한다.</p> <p>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p> <p>⑥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설안전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 제1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4.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p>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방법·시기·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5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p>	

<p>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p> <p>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교육시설의 장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p> <p>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⑥ 그 밖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시기·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p> <p>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의 실시 일정 2. 안전점검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p>② 교육시설의 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p> <p>③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p>
<p>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p> <p>① 교육시설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⑤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시기·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p> <p>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일정 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p>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15조(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불실한 안전점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 상태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안전점검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점검등을 할 때 사용된 검사·조사·분석·측정 등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서류 평가와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교육시설 이용자의 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시설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신속하게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2. 대체시설의 확보
 3.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4.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5. 교육시설의 철거
 ④ 그 밖에 안전점검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결함의 원인·종류 및 정도, 해당 조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제18조(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평가한 결과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이 지정한 안전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등급 변경 사실을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p> <p>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p> <p>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p> <p>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안전성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p> <p>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p> <p>③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p> <p>1.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p> <p>2.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p> <p>3.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p> <p>④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p> <p>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p> <p>⑥ 법 제19조제2항에서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건축 계획서의 수정·보완 등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p> <p>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자는 해당 조치를 위한 계획서를 미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⑧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자는 해당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0조(안전 확보 요청)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1조(시정명령)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p> <p>1의2.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p> <p>2.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p> <p>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p>		
제3장 교육시설 정보관리 및 조사		
<p>제22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필요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p>	<p>제21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에서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p>	

<p>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공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시행계획·실행계획 2.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4. 교육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6.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7.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8.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③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시설별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그 밖에 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현황에 관한 사항 <p>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p>	
<p>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p> <p>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사고의 보고 및 조사 내용·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및 중대한 결함의 내용, 응급안전조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p> <p>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를 해당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p> <p>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의 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분석한 사항 	
<p>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p>		

<p>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학생의 정서,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3.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내외 교육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4.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p>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시설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p> <p>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감염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1. 12. 28.></p> <p>③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 참여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사용자 참여)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축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제26조의2(사전기획) ①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 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 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 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3. 교육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사전기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
3.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본조신설 2022. 6. 28.]

제23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①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계획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전기획검토요청서에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적정성검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1.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토 또는 재검토를 요청받은 적정성검토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은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착공 전까지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적정성검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6. 28.]

제4조의2(사전기획의 내용)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 하기 위해 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7. 4.]

<p>제26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사공정비추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추산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p> <p>③ 그 밖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련된 세부절차,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2. 28.]</p>	<p>제23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①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 관련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전기획검토요청서에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적정성검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p> <p>②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토 또는 재검토를 요청받은 적정성검토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은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착공 전까지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적정성검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p> <p>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2. 6. 28.]</p>	
<p>제27조(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2. 안전한 우수 교육시설 사례 발굴 및 포상 3.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 		

<p>제28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의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 안전 관련 법령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화재예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p>	
제5장 교육시설 관리 지원		
<p>제29조(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p>		
<p>제32조(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시설의 개축을 위한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p>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분야의 기관·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
4.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전문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2. 6. 28.>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6. 28.>**
 1.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시설을 갖출 것
 3.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2. 6. 28.>**
-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6. 28.>**
-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6. 28.>**
- ⑥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6. 28.>**
- ⑦ 지정전문기관은 매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6. 28.>**
- ⑧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6.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보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 제1항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p>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p> <p>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교육시설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8.></p> <p>④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p> <p>[제목개정 2021. 12. 28.]</p>	<p>제25조의2(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의 보상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훼손된 교육시설과 그 밖의 물품: 교육시설(조형물, 울타리 등 건물 외공작물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p> <p>2.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이하 "교육시설이용자등"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p> <p>가. 요양비: 교육시설안전사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교육시설이용자등이 부담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등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교육시설이용자등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p> <p>나. 장애보상비: 가목의 요양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등급에 따른 비용</p> <p>다. 간병비: 가목의 요양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에 드는 비용</p> <p>라. 유족보상비 및 장례비: 교육시설안전사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p> <p>마. 그 밖에 사고 유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p> <p>② 교육부장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2. 6. 28.]</p>	
<p>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p>		
<p>제35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안전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제26조(지도·감독) 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검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미리 알려야 한다.</p>	

<p>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21.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시설 공제사업 2.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 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 4.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5. 교육시설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6.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 7. 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9. 교육시설 실험·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10.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11.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12.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점검 관련 업무 13.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14.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 15.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6. 그 밖에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p>② 안전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37조(안전원의 재정)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이 내는 회비 2. 제36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금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p>제38조(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②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39조(총회) ① 안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p> <p>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 3. 예산 및 결산 4. 사업계획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④ 그 밖에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40조(임원) ① 안전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p> <p>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안전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⑤ 안전원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p> <p>⑥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안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 <p>⑦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4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로 구성한다.</p> <p>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안전원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3. 사업계획 4. 임원의 임면 5. 예산 및 결산 6. 총회에 제안할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42조(예산 및 결산) ① 안전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안전원은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3조(준비금의 적립) 안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결산 시마다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p>		
<p>제44조(이익금의 처리) ① 안전원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실금의 보전(補填) 2.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43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p>제45조(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26조(지도·감독) 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검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미리 알려야 한다.</p>	
<p>제46조(준용)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48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이사장이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안전원에 파견할 수 있다.</p>		
제7장 보칙		
<p>제4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7조(업무의 위탁)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조사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p>	

<p>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통합정보망 구축·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 		
<p>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제8장 벌칙		
<p>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개정 2021.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p>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③ 제5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53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4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3.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5. 제47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	---	--